



대한건축사협회
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

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,
하나 된 건축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.

수 신 시·도건축사회 회장

(경유)

제 목 「건축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조회

1. 협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건축사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건축법」 일부개정법률안(황희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0493) 관련입니다.
3. 상기 법률안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발의된 바, 이에 귀 회의 의견을 조회 하오니, 검토의견을 2026.8.21.(금)까지 회신(kira-law@naver.com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「건축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

- 가. (제2조제1항제22호 신설)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,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의 용이성 등을 극대화한 구조·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
- 나. (제68조의4 신설) 구조·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기준 완화

붙 임 : 1) 「건축법」 일부개정법률안 1부
2)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. 끝.

대한건축사협회 회 장



담당자 이해진 팀장 성다경 국장 박재범 사무부처장 강주석 사무처장 고한상 상근 부회장 안충환 회장 김재록

협조자 (공람)

시행 법제 230 - 1485 (2026. 8. 11.) 접수

우 0664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8층

전화번호 02-3415-6840 / 팩스번호 02-3415-6868 /

/ <http://www.kira.or.kr>

kira@kira.or.kr / 비공개
문서24 “대한건축사협회”